

정 관

학교법인 정화예술대학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국민생활에 필수되는 기술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정화예술대학(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 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정화예술대학교
2. <삭 제>
3. <삭 제>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6길 21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을 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 산 과 회 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자산의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학원 운영에 관한 식물과 농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 회계는 일반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삭 제

- 제12조의2(예산·결산 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 제12조의3(위원회의 조직) 삭제
- 제12조의4(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 제12조의5(회의) 삭제
- 제12조의6(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 제12조의7(예·결산보고 및 공지)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명 (이사장 1명 포함)
2. 감사 2명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나,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 이사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나이·임기·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을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17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의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1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 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이사회회의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5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

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해 산

제2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제29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0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대학의 경우 총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⑥ 대학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비전임교원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 제30조의2(임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30조의3(기간제교원) ①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 ② <삭제>
- ③ <삭제>

제30조의4(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 정관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 가. 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제30조의5(신규채용 등) ①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31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32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31조제2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3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31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7. 제3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1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1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휴직 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31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

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

제34조(휴직 교원의 처우) ① 제31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을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31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8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되는 때에는 제2항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35조의2(정년) ① 초·중·고 교원의 정년은 62세, 대학 교원은 65세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일반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③ 교원 및 일반직원은 그 정년이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한다.

다만, 법인과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직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의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7조의2(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7조의3(명예퇴직수당) ①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인에서 결정한다.

제37조의4(특별승진) 교직원이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정관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 2 절 교 원 징 계 위 원 회

제38조(교원징계위원회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제39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징계의결요구사유통지) 교원이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3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징계 의결) ① 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45조(징계의결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6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의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47조(운영 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삭 제>

제48조 <삭 제>

제49조 <삭 제>

제50조 <삭 제>

제51조 <삭 제>

제52조 <삭 제>

제53조 <삭 제>

제54조 <삭 제>

제55조 <삭 제>

제56조 <삭 제>

제57조 <삭 제>

제58조 <삭 제>

제59조 <삭 제>

제60조 <삭 제>

제61조 <삭 제>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62조(자격) ① 사무직원은 일반직원으로 한다.

1. ~ 7. <삭 제>

②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연봉계약직원은 특정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무 또는 한시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단순 업무종사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⑤ 연봉계약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63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정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4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의2(명예퇴직수당) 일반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징계)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제 6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 제68조(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이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 ② 법인사무국의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 제69조(총장 등) ① 대학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대학에는 총괄부총장, 학사부총장, 행정부총장, 산학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총괄부총장, 학사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행정부총장, 산학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으로 보한다.
-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괄부총장, 학사부총장, 행정부총장, 산학부총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0조(하부 조직) ① 대학에 대학발전기획단, 정화건학이념아카데미, 남산캠퍼스본부, 기획예산실, 대외협력실, 비서실을 두고, 대학본부에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및 총무처를 둔다.
- ② 대학발전기획단장, 정화건학이념아카데미원장, 남산캠퍼스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으로 보하고, 교무처장, 학생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기획예산실장, 대외협력실장, 비서실장, 기획처장, 총무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단, 대학발전기획단장, 정화건학이념아카데미원장은 외부전문가를 연봉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70조의2(부속 및 부설기관) ① 대학에는 필요한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부속 및 부설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 ③ 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④ 부속 및 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을 정한다.

제 3 절 <삭 제>

제71조 <삭 제>

제72조 <삭 제>

제 4 절 <삭 제>

제73조 <삭 제>

제74조 <삭 제>

제 5 절 정 원

제75조(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7 장 보 칙

제76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신문에 공고한다.

제77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78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한 창 윤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151	1954. 12. 1~1958. 11. 1
이 사	권 정 희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151	1954. 12. 1~1958. 11. 1
이 사	채 대 식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151	1954. 12. 1~1958. 11. 1
이 사	김 규 민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151	1954. 12. 1~1958. 11. 1
이 사	이 흥 규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151	1954. 12. 1~1958. 11. 1
감 사	강 윤 기	서울시 중구 인현동 142-1	1954. 12. 1~1956. 11. 1

부 칙 (행정 1040 - 114)
이 정관은 197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0 - 344)

이 정관은 197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회 1732. 52 - 3136)

이 정관은 197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실업 1040)

이 정관은 197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회 1732. 53)

이 정관은 197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회 1732. 53 - 4084)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결격사유 해당자)
-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정원이 퇴직 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2 및 3의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관리 1042 - 3990)

이 정관은 197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20 - 5994)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과 유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하는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부터 시행한다.(2007.6.26 인가)

② (임원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4조(임원의 임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임기에 의한다.

③ (기타)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의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7.12.10 인가)

②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의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8. 2.21 인가)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인 일 반 직 원 정 원

총 계	4명
일반직 계	4명
4급(참 사)	1명
5급(부참사)	1명
9급(부서기)	2명

[별표 2]

정 화 예 술 대 학 교 일 반 직 원 정 원

구 분	학 교	계
총 계	57	57
일반직 계	57	57
참 여 (2급)	2	2
부 참 여 (3급)	2	2
참 사 (4급)	2	2
부 참 사 (5급)	5	5
주 사 (6급)	7	7
주 사 보 (7급)	9	9
서 기 (8급)	10	10
서 기 보 (9급)	20	20

[별표 3] <삭 제>

[별표 4] <삭 제>